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6. 5.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년 5월 24일

나. 발 의 자 : 신현도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3년 5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17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3년 6월 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신현도 의원)

가. 제안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함.(안 제3조제2항)
-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3)
- 3)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4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 주요기능은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 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음.

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안전과 관련 있는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사유를 명시한 상위법 개정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원들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였고,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
----------	-----

발의연월일 : 2013년 5월 일

발 의 자 : 신현도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2. 7. 4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함.(안 제3조제2항)
-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3)
- 다.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개 정 안 : “별 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제5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동산정보과, 총무과 합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5. 16 ~ 5. 21)결과 : 의견 없음

3) 타구 조례 개정현황 : 양천구, 강북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로 하고,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위촉)”을 “(위원위촉 및 위촉 해제)”로 하고,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연 3회 이상 연속)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 조에 따라 설치되는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u> ----- -----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는-----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위촉) (생 략) <신 설>	제3조(위원위촉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연 3회 이상 연속)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관 련 법 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